

1. 개정이유

주유취급소 등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160호, 2024. 1. 30. 공포, 2024. 7. 31. 시행)됨에 따라,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·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·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(안 별표 4 Ⅲ 제3호, 별표 5 I 제3호, 별표 6 Ⅲ 제1호, 별표 7 I 제1호다목, 별표 8 I 제5호, 별표 9 제3호, 별표 11 I 제1호마목, 별표 12 VI 제1호, 별표 13 Ⅱ, 별표 14 I 제1호나목, 별표 15 IV 제20호가목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Ⅲ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제조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.

가.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및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할 것

나. 건축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, 바탕색 및 글씨색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할 것

별표 5 I 제3호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Ⅲ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옥내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6 Ⅲ 제1호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Ⅲ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7 I 제1호다목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Ⅲ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옥내탱크저장소가 금연

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8 I 제5호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III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9 제3호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III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간이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11 I 제1호마목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III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옥외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12 VI 제1호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III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암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13 II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같은 II 중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III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유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14 I 제1호나목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III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별표 15 IV 제20호가목 중 “동표”를 “같은 표”로, “게시판을 설치하여야”를 “게시판 및 같은 표 III제3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이송취급소가 금연

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